

자조금의 정치·경제적 의미

— 한국농업자조금연구회 —

“정부는 자조금제도가 농민과 소비자를 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제도임을 확신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입법을 적극 권장하고 협조해야 한다.”

1. 농업부문의 위상변화

○ 농업의 상대적인 성장저조, 농민의 정치 경제적 지위 약화, 농촌의 불균형적인 발전.

○ 지구화(globalization)와 국제경제의 질서변화 및 농업(농산물)시장개방의 지속적 압력.

○ 농도화(rurbanization)와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부진 및 농가소득의 감소.

○ 공동목표(common goals)와 단체활동(joint activities), 그에 필요한 재원확보(securing funds).

○ 농업의 장기적 발전계획, 농민이 참여하는 농정형성, 농업공동문제의 공동해결, 현실에 맞는 품목협회와 협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, 통합경영(계열화)의 실현.

2. 농민의 자구대책

○ 민주주의/시장경제 체제하의 이익집단(interest group) 결성과 농업부문의 생존대책.

○ 3 I 개념의 정립-개인(individual), 통합(integration), 산업(industry).

○ 산업차원의 경쟁력 제고와 생존전략.

3. 자조금의 유래 및 정의

○ 영어의 check-off, 근로자의 급료 지급시에 고용자가 공제조합비를 공제(the deduction of union dues from a worker's paycheck by the employer, 1911), 자진행동(동작) 또는 자진규제(조절)장치(a self-acting or self-regulating mechanism-automatic, 1748).

○ 미국에서 농업조정법

(Agricultural Adjustment Act, 1933) 및 그와 관련된 농업법에 의하여 농업부문에 맨 먼저 응용 실시.

○ 자조금(check-off funds, self-help funds, self-imposed funds), 자조금 제도(check-off system), 자조금법(check-off funds act).

○ 유사용어 : 관세(taxes/duties), 부과금/할당금(levy/assessment), 회비(fees, dues), 요금/수수료(charges, rates, fees, fares, commission, percentages, brokerages)

○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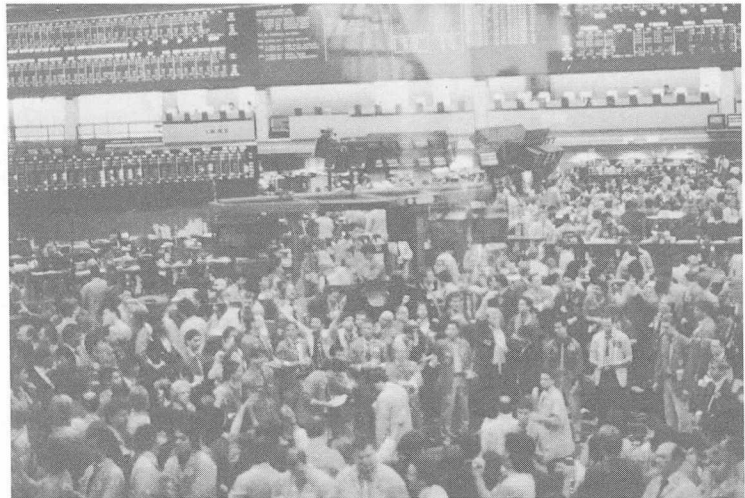
• 광의 : 이익집단이 스스로 조달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재원.

• 협의 : 법적인 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로써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부과하여 수금, 조성하는 제도적인 목적기금.

4. 자조금의 생략과 목적

○ 농민의 자조조직(farmer's organization for farmers) - 민주화 실현, 농민의 공동이익추구, 무임편승 배제.

○ 산업의 공동위험관리(common risk management of industry) - 품목별 산업위험의 일괄관리, 통합경영 및 협동조합 체계의 촉구, 산업의 장기



발전 대책.

○ 법정제도(enabling legislation) - 자조금 기본법, 품목별 특별법

○ 수익자가 부담하는 극소액 부과(limited amount assessment under benefit principle) - 세금(정치)/자조금(경제)/회비(사회)의 구분, 경영규모에 비례한 자진부과, 소액부과(판매액의 0.1~0.5% 내외), 자동공제

○ 자체관리(self-management) - 농민결의, 대표성(이사회), 전담관리기구, 운영공개, 성과 평가.

○ 품목촉진(commodity promotion) -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, 개발, 교육, 소비 촉진, 수출입 조정 등.

5.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자율제도

○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방식으로 고도 산업사회에서 스스로의 방어와 발전을 획책하는 산업차원의 민주적 자율제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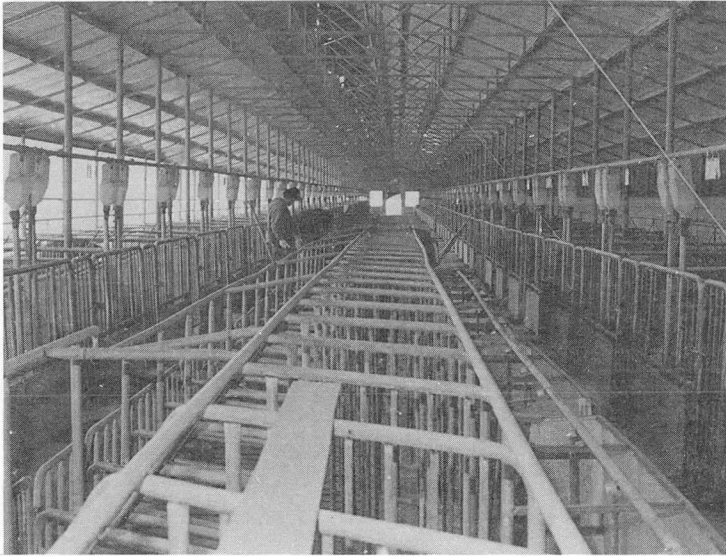
○ 민주주의의 참여(participation)와 지도성(leadership)을 중시하는 농민의 생존활동(survival activity).

○ 자조금에 대한 발의, 토론, 교육, 합의, 실시, 평가 등 전과정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농민의 자구제도 - 반환 청구 허용.

6. 공감대 형성과 찬반투

○ 생산자 농민이 자조금의 필요성을 공동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려는 산업의 주인 의식 제고 및 공감형성.

○ 자조금제도에 대한 입법, 행정, 학술연구, 연관산업, 소비



자 단체, 언론 등의 긍정적 반응 및 지원분위기 조성.

○ 품목별 해당 농민의 의향 투표(referendum)-새로운 제도실시에 대한 찬반투표, 실시 중인 제도의 계속 여부에 대한 수년마다의 찬반 투표.

7. 의무적 참여

○ 무임편승자(free riders)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당해 농민의 의무참여(mandatory participation), 수익자 공동부담의 원칙-초기에는 임의참여(voluntary participation)도 시도.

○ 농민생산자뿐 아니라 연관산업의 해당자까지 의법참여를 의무화-유통 및 수입업체의 판매 또는 수입시점 징수의무(원천징수성격).

○ 품목산업의 기존생산자 조직에 관계없이 그 품목의 생산자를 기준한 의무적 참여-협회 회원, 협동조합 조합원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생산자 참여.

8. 운영(관리) 기구

○ 품목별 자조금 운영기구 설치-이사회와 집행부로 구성.

○ 기존 농민단체가 운영을 주관하던가, 자조금 전담기구를 만들어 관련 모든 단체와 협력, 운영.

○ 자조금 관리기구의 설치, 운영은 법에 의한 대표제(representation) 기준, 공개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(evaluation)하여 계속 여부의 찬반 기초가 되게 함.

9. 정부의 역할

○ 자조금 제도는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농민의 민주적 자구활동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에 적극 협조, 육성-헌법 124조(국가는 농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한다).

○ 농민과 소비자를 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제도임을 확신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입법을 적극 권장, 협조.

○ 제도의 발의, 입법, 집행 과정에 대한 타당성, 적법성, 공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에 긍정적으로 대처, 추진, 감독.

10. 농업부문의 민주화 실현

○ 농민이 주도하는 농민 이익집단의 생존대책 강구.

○ 농민의 농업주인의식 제고 및 3I 개념의 확립.

○ 농민의 정치 경제적 입장 강화.

○ 농민에 의한 농촌문제의 해결촉구.

○ 농업부문의 민주화 실현.